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부의장 정수 증원〉

- 김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830호)
- 조정식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024호)

2026. 3.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광 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김태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213830)

가. 발 의 자 : 김태호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0. 31.

다. 회 부 일 : 2025. 11. 3.

2. 조정식의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214024)

가. 발 의 자 : 조정식의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11. 7.

다. 회 부 일 : 2025. 11.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김태호의원 대표발의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주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상 부의장수를 25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해외 지역 부의장이 통할하는 지역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여성·청년 부의장 제도의 안정적 운영 필요 등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부의장 총수 제한을 25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상향 조정해

해외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여성·청년 직능의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2. 조정식의원 대표발의안

현행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부의장 정수를 25명 이내로 하고, 부의장 임명 시 출신 지역 및 직능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및 직능을 대변하는 다양한 주체들에 비하여 현행 부의장 정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역 및 직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의장 정수를 30명으로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현행 25명인 부의장 정수¹⁾를 증원하려는 것으로, 김태호 의원안은 현행 대비 10명을 증원한 35명으로, 조정식 의원안은 5명을 증원한 30명으로 각각 증원하는 내용임(안 제6조제2항).

현행	김태호 의원안	조정식 의원안
제6조(의장·부의장) ① (생략)	제6조(의장·부의장) ① (현행과 같음)	제6조(의장·부의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 려하여 25명 이내의 부 의장을 임명하되, 이 중에서 여성은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② ----- ----- -----35명 이내 의----- ----- ----- ----- -.	② ----- ----- -----30명-----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현행법²⁾은 자문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25명 이
내에서 부의장을 임명하되, 여성을 부의장³⁾ 총수가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1) 부의장 수 관련 개정 연혁(참고자료 2 참조)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6조(의장·부의장) ② 의장은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25명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하되, 이 중에서 여성은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3) 동 보고서에서 ‘여성인 부의장’과 ‘여성부의장’의 개념을 달리 사용함, ‘여성인 부의장’은 성별이 여성인 부의장을 말하고, ‘여성부의장’은 여성 자문위원의 활동을 총괄하는 부의장으로 성별이 반드시 여성인 것은 아님.

- 제18기부터 제22기까지 부의장 임명현황을 보면, 수석부의장 1명, 국내외 지역별 부의장 23명(국내 18명, 해외 5명) 및 여성부의장 또는 청년부의장 중 1명을 임명하고 있어 부의장이 국내 출신지역 중심으로 임명되고 있음.

〈 최근 5기수 부의장 임명현황 (18~22기) 〉

구분	임기	협의회	국내	해외	자문위원수	부의장 총수	국내 부의장	해외 부의장	여성 부의장	청년 부의장
18기	'17.9.1~'19.8.31.	271	228	43	19,710	25	19	5	1	-
19기	'19.9.1~'21.8.31.	271	228	43	19,000	25	19	5	1	-
20기	'21.9.1~'23.8.31.	273	228	45	20,000	25	19	5	-	1
21기	'23.9.1~'25.8.31.	273	228	45	21,984	25	19	5	1	-
22기	'25.11.1~'27.10.31	273	228	45	22,824	25	19	5	1	-

자료: 민주평통, 국내부의장(19명)은 수석부의장 1인 + 국내 지역별 부의장 18인의 합계임.

- 이에 따라 여성 및 청년 자문위원의 활동을 총괄하는 여성부의장 및 청년부의장과 해외지역을 대표하는 부의장이 과소하게 임명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5년에 위촉된 제22기 자문위원 총 22,824명 중 여성 자문위원이 7,908명(40.0%), 청년 자문위원이 6,017명(30.5%)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여성·청년위원의 활동을 총괄하는 제22기 여성·청년 부의장의 경우 여성부의장은 1명에 불과하고 청년부의장은 임명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해외지역 부의장은 최근 해외 자문위원 수⁴⁾ 및 위촉 국가 수⁵⁾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해외부의장 1인이 통할하는 지역별

4) 해외 자문위원 수: 16기('13년) 3,275명 → 22기('25년) 4,037명 (약 23% 증가)

범위⁶⁾가 넓어 대륙별 특수성을 반영한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으나 해외 부의장 수는 2013년⁷⁾ 이래 5명을 유지하고 있음.

통일정책은 지역별·성별·세대별 다양한 관점이 정책형성 과정에 반영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청년 세대의 경우 최근 통일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⁸⁾을 보이고 있어 통일에 대한 체감도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목소리를 통일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의 확보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부의장 정수를 확대할 경우, 국내 출신지역 중심의 부의장 인선에서 벗어나 성별·세대별 균형⁹⁾이라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구성 원칙에 보다 충실할 수 있게 되고, 해외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 위촉 국가 수: 16기('13년) 115개국 → 22기('25년) 137개국 (약 18% 증가)

6) 해외부의장 통할 지역범위: 미주 4,200만km² > 유중아 4,000만km² > 아태 1,750만km² > 중국 960만km² > 일본 40만km²

7) [민주평통] 여성/해외 부의장 수 (제15~22기)

구분	제15기 ('11.7.~ '13.6.)	제16기 ('13.7.~ '15.6.)	제17기 ('15.6.~ '17.6.)	제18기 ('17.9.~ '19.8.)	제19기 ('19.9.~ '21.8.)	제20기 ('21.9.~ '23.8.)	제21기 ('23.9.~ '25.8.)	제22기 ('25.11.~ '27.10.)
해외 부의장 수	2	5						

8) '24년 하반기 통일·대북정책 정기 여론조사(통일부) : 통일 관심도 67.4% (△30대 이하 49.6% △40·50대 73.4% △60대 이상 77.2%)

9) 현행법 시행령 제4조는 자문위원 위촉 시 여성 40% 이상, 청년 30% 이상을 위촉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위원의 위촉) ② 사무처장이 위원의 위촉을 제청하거나 법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을 추천하는 자가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여성인 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 청년(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인 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 성별, 세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부의장 정수 증원 시 민주평통 개편안 〉

현행	개편안
총 25명	총 29명
수석부의장 1명	수석부의장 1명
지역부의장 23명 (국내 18명, <u>해외 5명</u>)	지역부의장 26명 (국내 18명, <u>해외 8명</u>)
여성부의장 1명	<u>여성부의장 1명</u> <u>청년부의장 1명</u>

- 참고로, 부의장 정수를 30명으로 증원할 경우에는 연간 약 3억 1,717만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35명으로 증원할 경우에는 연간 약 7억 844만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¹⁰⁾
- 한편, 민주평통은 개정안에 대해 해외지역조직의 체계적 운영 및 여성·청년 통일활동 활성화를 위해 부의장 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10) 상세내역은 참고자료 1 참조

○ 30명으로 증원 시 증액 소요액 : 연 3억 1,717만원

1. 간부위원 활동경비 : 연 1,800만원
* 5명 × 30만원 × 12개월
2. 해외 지역회의 운영비 : 연 1억 3,680만원
* 4개 권역 × 285만원 × 12개월
3. 운영위원회 여비 : 연 617만원
* 해외 부의장수 확대(+4명)에 따른 항공료(+492만원), 숙박비(+80만원), 식비 조정(+64만원), 국내여비 감소액(△19만원)
4. 해외 지역운영위원회 : 연 1억 5,620만원
* 운영위 개최 4개소 추가에 따른 일반수용비(+1,616만원), 임차료(+800만원), 국외여비(+1억 2,465만원), 사업추진비(+739만원)

○ 35명으로 증원 시 증액 소요액 : 연 7억 844만원

1. 간부위원 활동경비 : 연 3,600만원
* 10명 × 30만원 × 12개월
2. 해외 지역회의 운영비 : 연 3억 780만원
* 9개 권역 × 285만원 × 12개월
3. 운영위원회 여비 : 연 1,245만원
* 해외 부의장수 확대(+9명)에 따른 항공료(+967만원), 숙박비(+180만원), 식비 조정(+144만원), 국내여비 감소액(△46만원)
4. 해외 지역운영위원회 : 연 3억 5,219만원
* 운영위 개최 9개소 추가에 따른 일반수용비(+3,636만원), 임차료(+1,800만원), 국외업무여비(+2억 8,120만원), 사업추진비(+1,663만원)

참고자료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6조 개정 연혁

개정일	개정 사항	부의장수
1981.3.14. 제정	제6조(의장·부의장) ①대통령은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의장은 위원 중에서 그 출신지역과 직능을 참작하여 15인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한다. ③의장은 제2항의 부의장 중에서 수석부의장 1인을 지명한다.	15명 (15명 임명) 수석, 13시도, 이북5도
1988.2.17. 일부개정	제6조(의장·부의장) ①대통령은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의장은 위원 중에서 그 출신지역과 직능을 참작하여 20인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한다. ③의장은 제2항의 부의장 중에서 수석부의장 1인을 지명한다.	20명 ※ 12기(2005.7.)부터 20명 임명
2009.5.28. 일부개정	제6조(의장·부의장) ①대통령은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의장은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u>고려하여</u> 20명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한다. ③의장은 제2항의 부의장 중에서 수석부의장 1명을 지명한다.	20명 (변동 없음)
2010.5.20. 일부개정	제6조(의장·부의장) ①대통령은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의장은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하되, <u>이 중에서 여성은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u> ③의장은 제2항의 부의장 중에서 수석부의장 1명을 지명한다.	20명 (변동 없음)
2013.5.22. 일부개정	제6조(의장·부의장) ①대통령은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의장은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25명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하되, 이 중에서 여성은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③의장은 제2항의 부의장 중에서 수석부의장 1명을 지명한다.	25명

참고자료 3

제22기 국내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현황

지역회의	지역협의회			
	소계	시	군	구
18	228	77	82	69
서울특별시	25	-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광역시	16	-	기장군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대구광역시	9	-	달성군, 군위군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광역시	10	-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광주광역시	5	-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광역시	5	-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광역시	5	-	울주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세종특별자치시	-	-	-	-
경기도	31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강원특별자치도	18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
충청북도	11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
충청남도	15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전북특별자치도	14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참관군, 부안군	-

지역회의	지역협의회			
	소계	시	군	구
전라남도	22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강진군, 해남군, 장흥군, 보성군, 화순군, 영암군, 강진군, 무안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진도군, 신안군	-
경상북도	22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영주군, 칠곡군, 예천군, 울진군, 울릉군	-
경상남도	18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제주특별자치도	2	제주시, 서귀포시	-	-
이북5도	-	-	-	-

참고자료 4

제22기 해외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현황

지역회의	지역협의회	자문위원 수		공관 수	국가 수	위촉 국가
		21기	22기			
계	45	4,038	4,037	173	137	· (21기) 136국 → (22기) 137국 · (21기) 172공관 → (22기) 173공관
일본	소 계	443	455	10	1	
	일본동부	186	188	4	1	일본
	일본중부	60	59	2		
	일본근기	152	154	2		
	일본서부	45	54	2		
중국	소 계	329	344	9	1	
	베이징	79	81	2	1	중국
	광저우	63	65	2		
	칭다오	53	57	1		
	상하이	71	77	2		
	선양	63	64	2		
아시아·태평양	소 계	694	722	36	24	
	서남아	61	67	8	5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
	동남아남부	78	93	7	5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동남아북부	111	117	5	3	필리핀, 팔라우, 몽골, <중국(대만, 홍콩)>
	동남아서부	76	85	5	4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119	131	3	1	베트남
	호주	170	160	6	5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파푸아뉴기니, 피지, 호주
	뉴질랜드	79	69	2	1	뉴질랜드
미주	소 계	1,872	1,804	39	24	
	워싱턴	134	109	1	1	미국
	뉴욕	171	173	1		
	필라델피아	61	66	1		
	보스턴	53	60	1		
	로스앤젤레스	159	149	1		
	오렌지샌디에고	106	103			
	휴스턴	92	81	1		
	댈러스	96	99	1		
	애틀랜타	109	92	1		
	마이애미	55	34			
	하와이	70	56	2		
	샌프란시스코	89	80	1		
	덴버	37	55			

지역회의	지역협의회	자문위원 수		공관 수	국가 수	위촉 국가
		21기	22기			
	시애틀	118	114	2	1	캐나다
	시카고	115	85	1		
	토론토	123	147	3		
	밴쿠버	81	94	1		
	브라질	51	50	2	1	브라질
	중미·카리브	76	84	13	15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아이티, 멕시코, 베네수엘라,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남미서부	76	73	6	6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파라과이, 페루
유럽·중동·아프리카	소 계	700	712	78	87	
	영국	51	52	2	2	아일랜드, 영국
	남유럽	109	106	11	10	그리스, 몰타, 스페인, 알바니아, 사이프러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프랑스
	북유럽	147	127	10	10	네덜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핀란드, 에스토니아
	중동부유럽	60	73	10	15	루마니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스위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중동	78	80	15	14	레바논, 모로코, 모리타니아,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오만, 요르단, 이란,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아프리카	79	104	17	27	가나, 가봉,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말라위, 모잠비크, 보츠와나, 세네갈, 감비아, 앙골라,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차드, 카메룬, 케냐,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토고, 부룬디, 짐바브웨
	모스크바	47	45	3	2	러시아, 벨라루스
	러시아동부	21	23	2		
	중앙아시아	108	102	8	7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공화국,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